

[공모펀드 변경 안내]

가. 대상 펀드 : 교보약사 로보테크증권투자신탁1호(H)[주식]

나. 변경 시행일 : 2021년 11월 02일

다. 변경 내용 :

-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실제수익률 변동성 변경
(실제 수익률 변동성 '2등급 '23.43%' -> 실제 수익률 변동성 '2등급' 23.76%)
-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개정사항 반영
- 연금계좌 과세 개정사항 반영
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
[일괄신고서, 투자설명서]

| 구분 | 정정전 | 정정후 |
|---|--|--|
| [요약정보] 투자비용 표 | |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|
| 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| <신설> | 바.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</u> : [X] <u>해당사항없음</u> |
| 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| | 작성기준일로 갱신 |
| 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| <u>투자위험 등급 (2) 등급</u> <u>높은 위험 수준</u> 교보약사자산운용(주)는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표준편차 23.43%)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2 등급(높은 위험)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| <u>투자위험 등급 (2) 등급</u> <u>높은 위험 수준</u> 교보약사자산운용(주)는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표준편차 23.76%)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2 등급(높은 위험)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|
|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| -상장주식: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- 장내파생상품: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- 외국집합투자증권: 평가기준일의 최근 | -상장주식 및 등록주식: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 <u>-장내파생상품: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(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</u> - 외국집합투자증권: 평가기준일의 최근 |

| | | |
|--|--|--|
| | 일에 공고된 기준가격. 다만,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 | 일에 공고된 기준가격. 다만,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<u>전날의</u> 최종시가로 평가 |
|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| - | -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 - 1,000 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업데이트 |
|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4)연금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| [정정 전 1] 참조 | [정정 후 1] 참조 |
| 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(세전 기준) | |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 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 |
| 제 4 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| |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 라. 운용자산 규모 -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 |

[간이투자설명서]

| 항 목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[요약정보]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 | |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|

[정정 전1]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---------|---|
| 납입요건 |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 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. 단, 이연퇴직소득 및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은 제외) |
| 수령요건 |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 |
| 세액공제 | 연간 저축금액(최대 400만원 한도)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※종합소득금액 4,0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,500만원) 이하: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|
| 연금수령 시 과세 | 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%(분리과세) |
| 분리과세한도 |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) |
| 연금계좌 승계 | 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 |
| 해지가산세 | 해당사항 없음 |
|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| 연금소득세 5.5~3.3% 분리과세(지방소득세 포함) |
| | [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] 천재지변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,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,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 |
| 일반해지시 과세 | 기타소득 16.5% 분리과세(지방소득세 포함) (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) |

[정정 후1]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---|---|
| 납입요건 |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|

| | |
|-----------|---|
| |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(이하 "전환금액"이라 한다)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|
| 수령요건 |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 |
| 세액공제 | <p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]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. [2017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] 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 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 중 적은 금액. [2020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] <p>※ 종합소득이 있으며, 해당 과세기간에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. [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]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|
| 연금수령시 과세 | 연금소득세 5.5 ~ 3.3%(연령에 따른 차등과세, 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% |
| 분리과세한도 |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 |
| 연금외수령시 과세 | 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|
| 해지가산세 | 없음 |

| | |
|-----------------|--|
|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천재지변 -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 제 50 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·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-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|
|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| 연금소득세 5.5 ~ 3.3%(연령에 따른 차등과세, 지방소득세 포함) |
| 연금계좌 승계 | 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 |